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대한민국 066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5층

발송일 (일/월/년) 2019년 05월 07일 (07.05.2019)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OPP17-074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142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9월 27일 (27.09.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8일 (28.09.2017)

국제특허분류(IPC)
C12N 15/113(2010.01)i, C12N 9/22(2006.01)i, C12N 15/10(2006.01)i, C12N 15/86(2006.01)i, C12N 15/90(2006.01)i, A61K 48/00(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톨젠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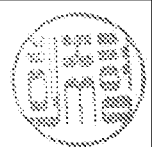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05월 07일 (07.05.2019)

심사관
허주형
전화번호 +82-42-481-8150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3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아래 표시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 전체 국제출원
- 청구항 30-33

이유:

- 상기 국제출원 또는 상기 청구항 30-33
은(는) 국제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다음 대상에 관련됩니다(구체적으로 명시):
청구항 30-33은 수술에 의한 치료방법에 해당합니다 (PCT 규칙 43의2.1(b), 67.1(iv)).

- 발명의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특정 요소를 아래에 기재), 또는 상기 청구항 이(가) 불명료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으로 명시):

- 청구범위 전체, 또는 상기 청구항 _____ 은(는)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청구항 30-33 _____ 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서열목록이 없어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 서열목록을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제조사기관은 허용 가능한 형태 및 방법으로 그 서열목록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제출된 서열목록이 시행세칙 부록 C에서 규정하는 표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서열목록을 시행세칙 부록 C에 규정된 표준과 부합하는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제조사기관은 허용 가능한 형태 및 방법으로 그 서열목록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제출된 서열목록이 시행세칙 부록 C에서 규정하는 표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PCT규칙 13의3.1(a) 또는 (b)의 규정에 따른 서열목록 제출요구에 대응하는 서열목록 제출에 필요한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기재란을 참조하십시오.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29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1-29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29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5-0105633 A (더 브로드 인스티튜트, 인코퍼레이티드 등) 2015.09.17

D2: KR 10-2015-0101446 A (주식회사 툴젠) 2015.09.03

D3: WO 2017-035416 A2 (DUKE UNIVERSITY) 2017.03.02

D4: KR 10-2016-0050069 A (프래지던트 앤드 펠로우즈 오브 하바드 칼리지) 2016.05.10

D5: WO 2017-083852 A1 (MOORE, TARA 등) 2017.05.18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25

청구항 1의 가이드 도메인을 포함하는 중복 유전자의 발현 조절용 조성물은 인용문헌들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 2-25는 청구항 1의 종속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1-25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2. 청구항 26-29

청구항 26-29는 중복 유전자의 발현 조절용 조성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25와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26-29는 청구항 1-25와 같은 이유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1-29는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

※ 청구항 20에 기재된 ‘진행세포는’은 ‘진핵세포는’의 오기로 판단됩니다.